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대토보상계획 정정(변경) 공고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-673호(2022. 11. 29.)로 지구 지정되고,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-875호(2024. 12. 30.)로 지구계획 승인된 「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」의 대토보상계획 공고(2026. 10. 28.)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정정(변경) 공고합니다.

□ 정정(추가) 내용

1. 공동주택용지 대상자 선정기준(추가)

○ (당초) 별도 기준 없음

⇒ (변경) 공동주택용지(주상복합용지 제외)는 대토신청액이 5억 원 이상인 자연인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법인·단체는 신청할 수 없음.

※ 최소 신청금액은 대토보상 신청일부터 대토공급계약 체결 시까지 유지하여야 하며, 현금보상 전환 등으로 대토보상금액이 5억 원 미만이 되는 경우 공동주택용지 대토보상 자격을 상실함.

2. 신청 제한사항(추가)

○ (당초)

- 대토보상은 1인 1필지만 신청 가능
- 종중은 공동주택용지, 주상복합용지에 대하여 대토보상 신청 불가

⇒ (변경)

- 대토보상은 1인 1필지만 신청 가능(변경없음)
- 종중은 공동주택용지 및 주상복합용지에 대하여 대토보상 신청 불가(변경없음)
- 공동주택용지는 동일 세대당 1필지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, 법인·단체는 신청 불가

3. 유사용도 중복제한(추가)

○ (당초) 별도 기준 없음

⇒ (변경)

- 단독주택용지로 대토공급을 받은 자는 협의양도인택지(주택) 공급대상에서 제외한다.
- 공동주택용지로 대토신청을 한 자(이하 `**공동대토 신청자**`) **본인 또는 동일세대원**이 다음 각 항의 대상자로 선정될 시, `**그 선정된 자**` 또는 `**공동대토 신청자**`를 유사용도(성격) 중복공급(지급) 대상에서 제외한다.

  ① 이주자택지(주택) 대상자 ② 이주정착금 대상자 ③ 협의양도인택지(주택) 대상자

  ※ ① `**그 선정된 자**`는 이주자택지(주택)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, `**공동대토 신청자**`가 **분양주택 우선공급**`을 받을 경우 해당 주택 **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공사가 산정하여 부담(차감)**한다.

※ ② **`그 선정된 자`**는 **이주정착금만 수령**하고 **`공동대토 신청자`**는 **`분양주택 우선공급`**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다.

※ ③ **`그 선정된 자`**는 협의양도인택(주택)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며, **`공동대토 신청자`**가 **`분양주택 우선공급`**을 받을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는 공사가 부담하지 아니한다.

※ 공동주택용지 대토신청자와 동일 세대원은 대토보상 신청 시 중복제한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 및 확약서에 전원 날인하여야 함.

※ 대토공급계약 체결 시 공동주택용지 중복제한에 관한 특약사항을 부기함.

□ **기타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당초 대토보상계획 공고문 및 공사「대토보상 시행지침」등 관련법령의 기준에 따릅니다.**

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[보상총괄 02-6278-6488 / 광명·옥길동 02-6278-6491 / 노온사동(북) 02-6278-6497 / 노온사동(남) 02-6278-6466 / 과림동(북) 010-5408-2026 / 과림동(남) 02-6278-6461] 또는 경기주택도시공사(광명시 가학동, 시흥시 무지내동·금이동, 02-897-0224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10월 29일

경기도지사,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, 경기주택도시공사사장